신탁부동산 공매(입찰) 공고

1. 공매목적 부동산(7. 공매참가조건의 '바. 제세공과금 등 부담에 관한 내용'및 '자. 임대차 관련 특이사항' 부분을 주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ㅁ키미누	물건번호 소재지			면적	n) =
눌건 번오	소재시 	동,호수	전용(m²)	대지권의 비율	비고
1		201호	92.33	1373.16분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1				92.33	(사무소)
2		301호	58.98	1373.16분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0013	00.50	58.98	(사무소)
3		401호	75.69	1373.16분의	업무시설(오피스텔)
_				75.69	7, , , , ,
4		402ই	71.56	1373.16분의	업무시설(오피스텔)
				71.56 1373.16분의	
5		501호	75.69	1373.10군의 75.69	업무시설(오피스텔)
				1373.16분의	
6		502호	71.56	71.56	업무시설(오피스텔)
				1373.16분의	
7		601호	75.69	75.69	업무시설(오피스텔)
0		200=	71.50	1373.16분의	시민기계(스키기메)
8	,,,,,,,,,,,,,,,,,,,,,,,,,,,,,,,,,,,,,,,	602호	71.56	71.56	업무시설(오피스텔)
9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654-26, 654-27	702호	71.56	1373.16분의	업무시설(오피스텔)
9	장전드리움			71.56	
1 0		801호	75.69	1373.16분의	업무시설(오피스텔)
		00133	10.00	75.69	
1 1		901호	62.13	1373.16분의	공동주택
				62.13	(다세대주택)
1 2		902호	59.27	1373.16분의	공동주택
				59.27 1373.16분의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1 3		1001호	62.13	62.13	(다세대주택)
				1373.16분의	공동주택
1 4		1101호	62.13	62.13	(다세대주택)
		1102호	59.27	1373.16분의	공동주택
1 5				59.27	(다세대주택)
1.0		1201호	62.13	1373.16분의	공동주택
1 6				62.13	(다세대주택)
1 7		1202호	59.27	1373.16분의	공동주택
1 /		1202모	J3.41	59.27	(다세대주택)

주1 : 공매목적부동산 및 공매관련 세부내역은 등기사항증명서, 신탁원부, 토지·건축물대장 또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등기사항증명서상 압류나 근저당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2 : 신탁사(이하 '당사'라 함)를 납부의무자로 하는 매매부동산의 세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교통유발금 등) 미납에 따른 압류는 낙찰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완납한 경우 해당 잔금으로 당사가 이를 납부합니다.

주3 : 2021년분부터 신탁부동산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세법 개정에 따라 당사를 납부의무자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1년 6월에 이후 발생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당사가 정산, 납부하지 않습니다.

주4 : 본건 신탁 부동산 공매는 세금 체납에 따른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와 관련이 없습니다.

2. 매각 방법 [□일괄매각 / ☑개별매각]

3. 차수별 입찰일시 및 최저입찰가격

3. 차수별 입찰일시 및 최저입찰가격 [단위 : 원/ VAT포			
(응찰가능)		25.08.04.	25.08.05.
물건	공매일시 온비드	10:00 ~ 18:00	10:00 ~ 18:00
번호	온비드	25.08.05.	25.08.06.
민오	개찰일시 공대물건	9:00	9:00
		8회차	9회차
1	201호	256,000,000	231,000,000
2	301ই	164,000,000	148,000,000
3	401호	238,000,000	215,000,000
4	402ই	226,000,000	204,000,000
5	501ই	238,000,000	215,000,000
6	502ই	226,000,000	204,000,000
7	601ই	238,000,000	215,000,000
8	602ই	226,000,000	204,000,000
9	702ই	226,000,000	204,000,000
10	801ই	238,000,000	215,000,000
11	901호	227,000,000	205,000,000
12	902ই	217,000,000	196,000,000
13	1001호	227,000,000	205,000,000
14	1101호	227,000,000	205,000,000
15	1102호	217,000,000	196,000,000
16	1201호	227,000,000	205,000,000
17	1202호	217,000,000	196,000,000

주1: 본 공매공고는 신탁관계인의 사정 등에 의하여 개찰 이전에 별도 공고 없이 공매가 중지 또는 취소(공매일시(응찰 가능일시)에 복수의 회차로 입찰이 진행될 경우 전회차 입찰 후 채권자의 요청 등으로 인해 별도 공고없이 후회차 입찰이 개찰 전 취소(무효)되는 사항 포함)되거나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당사에 일체의 이 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2: 공매목적부동산이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일 경우, 최저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입니다.

※ 부가가치세는 낙찰가에서 토지 건물 비율로 건물가를 계산한 금액의 10%임

주3: 본 공매공고에서 매수인이 책임지는 사항(명도 책임, 제한 물권 등)은 **매수인이 입찰가격 외 별도의 금액으로 책임** 지는 것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주4: 실거래 신고(금액)에 대한 책임은 매수인이 지는 조건입니다.

주5: 온비드 시스템에 의하여 온비드 시스템 상 표시되는 공매공고 내용(공매일시 등)이 첨부된 공매공고 내용과 다른 경우가 있는 바, 온비드 시스템 상 표시되는 공매공고 내용(공매일시 등)과 첨부된 공매공고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첨부된 공매공고 내용을 우선 적용하며, 입찰참가자가 첨부된 공매공고 내용을 미숙지 하여 발생하는 공매참가기회 상실 등의 불이익은 우리자산신탁(주)가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4. 입찰에 관한 사항

가. 공매사항

• 공매장소 : Onbid 홈페이지(www.onbid.co.kr)

• 공매공고 : Onbid 홈페이지(www.onbid.co.kr) 및 당사 홈페이지(www.wooriat.com)

• 문 의 처 : 우리자산신탁(주) 부산지역본부 ☎ 051) 714-4749

나.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의 성립 : 일반경쟁입찰로써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단독입찰도 유효)하며, 공매시간(입찰시간) 이후에는 공매장소에 입장할 수 없으므로 공매시간(입찰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 찰 : 입찰 종료 후 입찰 장소에서 개찰합니다.
- 낙찰자 결정: 최저 입찰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최고가격 입찰자 2인 이상이 동일금액일 경우에는 최고가격 입찰자들만을 대상으로 Onbid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입찰자는 낙찰여부를 온비드의 입찰결과 화면 등을 통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매일시(응찰가능일시)에 복수의 회차로 입찰이 진행될 경우 전회차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됨을 알려드리며, 후회차 입찰자는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이자 없이 원금만 반환받습니다. 이에 대하여 입찰자는 우리자산신탁(주)에게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수의계약 : 공매가 유찰될 경우 전 차수 공매예정가격 이상으로 하여 선착순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취소 등 확인 : 본 입찰은 당사 사정 발생 시 별도 공고 없이 공매가 중지 또는 취소(공매일시(응찰가능일시)에 복수의 회차로 입찰이 진행될 경우 전회차 입찰 후 채권자의 요청 등으로 인해 별도 공고없이 후 회차 입찰이 개찰 전 취소(무효)되는 사항 포함)되거나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사전에 당사로 입찰 실시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①낙찰된 후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공매요건이 해소되는 경우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서 토지거래허가신청이 불허되는 경우에는 낙찰은 취소될 수 있으며 ②당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이 공매공고 등의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낙찰이나 체결된 매매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또한 ③입찰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까지 추가적인 제3자의 권리침해(가압류, 가처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 등)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이행 또는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다고 매도자가 판단하는 경우, 매매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위 ① 내지 ③에서 낙찰이 취소되거나 무효된 경우 또는 매매계약이 무효된 경우 매도자는 매수자가 기 납부한 매매대금을 이자 없이 원금(단, 토지거래허가신청이 불허되는 경우에는 온비드 낙찰수수료를 공제한 금액)만 반환하며 이에 대하여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부가가치세 : 본 공매 부동산의 <u>부가가치세는 포함</u>(과세대상인 경우에 한함)이며, 낙찰가에서 감정가의 비율로 토지와 건물 비용을 계산한 후 건물 비용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산정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주체(매도인 당사)로부터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입니다. 단, 공매목적부동산이 주택법상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경우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5. 입찰보중금

- 가. 입찰금액의 10% 이상 인터넷입찰마감시간 전까지 Onbid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 나. 입찰자는 최초 입찰서 제출 시 우리은행(우리위탁), 신한은행(신한위탁) ,하나은행(하나위탁), 기업은행(기업위탁) 및 부산은행(부산위탁) 중 하나의 은행을 선택하여 입찰보증금 납부계좌(가상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납부 계좌 발급은행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최초 발급받은 납부계좌로 입찰보증금 납부가 불가한 경우 입찰서 제출시 납부계좌 발급은행 외의 은행 납부계좌를 추가 발급 받아 입찰 보증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 다. 공매개찰 결과 유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정한 환불예금계좌로 개찰일에 이자 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6.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토지거래허가 또는 신고대상물건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신고수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회사 소정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만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위약금(신탁재산)으로 귀속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위약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공매요건이 해소되어 낙찰이 취소된 경우 또는 관계법령의 제정·개정 및 천재지변 등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체결 이 불가한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이자 없이 반환합니다.
- 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시 매매대금으로 대체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잔금을 포함한 매매대금 전액

(부가가치세 등 포함)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잔금납부기일을 지연한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계약금)은 당사에 위약금(신탁재산)으로 귀속됩니다. <u>잔금 지급 종기가 당사 영업일이</u>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잔금 지금 종기로 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매수인은 매매대금 중 부가가치세 납부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주체(당사)로부터 교부받아야 합니다.

구 분	금 액	납부일
계약금	부가세 포함 매매대금의 10%	입찰보증금으로 대체
잔 금	부가세 포함 매매대금의 90%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라. 계약체결시 필요서류

구 분	
개 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법 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표자신분증
대리인	위임장(본인 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마. 계약체결 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40, 16층(범천동, ABL부산타워) 우리자산신탁(주) 부산지역본부

7. 공매참가조건

- 가. 매수자는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및 소유권이전 관련비용(이전비용 및 제세공과금 등)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나.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전까지 명의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다. 매수자는 공매물건의 현상 그대로를 인수하며,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정리는 매수자 책임으로 합니다.
- 라. 본 목적부동산에 존재할 수 있는 제한물권, 소송관련사항(소유권분쟁 포함), 임차권, 유치권, 기타 이해관계인과 의 민원사항 등은 매수자가 승계하여 책임 처리하는 조건입니다. 추후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매도인은 일체의 하자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요건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임차인이 있을 시 낙찰자는 매각 대금 외에 임차보증금을 별도로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관계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책임 하에 사전조사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마. 공매목적부동산으로 표시되지 않은 물건(시설물, 구조물, 기계, 장치 등 일체)과 제3자가 시설한 지상물건 등에 대한 명도, 철거, 수거, 인도 등의 책임과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바. 잔금완납일 이후 발생되는 공매목적부동산에 대한 제세공과금, 관리비 및 각종 부담금 등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단, 아래 각 목의 경우는 기재된 내용에 따른다.

- 아 래 -

- (1) [특히 매매대금 완납일 전후를 불문하고 매도인(당사)은 공매목적부동산의 관리비, 수도, 가스, 전기비를 책임지지 않으며 매수인이 현황대로 인수(승계)하여 매수자의 부담으로 책임지고 처리하는 조건의 매매이므로 매수자는 소유권 이전일 기준으로 정산된 공매 목적 부동산의 모든 관리비(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등 포함)를 완납하였다는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매도인(당사)에게 제출하여야 소유권 이전 서류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매수자는 매도인(당사)에게 관리비 및 구상권 청구 등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 및 민원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 (2) [공매목적부동산에 대한 매도자를 납부의무자로 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교통유발부담금은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도인(당사)가 매매대금에서 정산 납부 하기로 함] 단, 2021년 이후 부과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매도인에게 지급 책임이 없으며, 매수인의 책임으로 한다. 매도인(당사)이 부담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2021년 이후 부과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일 경우, 매도인(당사)은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관할관공서가 매도인(당사)에게 서면으로 납부요청을 하여 매도인(당사)에게 물적납부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만 신탁재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기로 한다.
- 사. 입찰일 기준으로 공매물건의 제한권리는 매수자 책임으로 정리하되, 입찰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까지

- 추가적인 제3자의 권리침해로 인하여 소유권이전이 불가 시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고, 매도자는 낙찰자(매수인)가 기납부한 대금을 이자 없이 원금만 반환하며 이 경우 낙찰자(매수인)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아. 입찰자(낙찰자,매수인) 관계 법령에 의거 매각 대상 물건의 매매계약허가, 토지거래허가 등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계약)하여야 하며,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 관련비용(이전비용 및 제세공과금 등)과 토지거 래허가, 부동산 거래계약신고, 용도변경 등 인ㆍ허가의 책임 및 추가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자. 임대차 관련 특이사항

- (1) 공매목적 부동산에 임대차가 존재하는 경우, 실제 임대차 권리관계는 관할주민센터(세무서) 전입세대열람(등록사항 열람) 및 탐방조사 등의 방법으로 <u>입찰자(낙찰자,매수인)</u>이 직접 <u>입찰자(낙찰자,매수인)</u>의 책임과 비용으로 사전 조사하여야 합니다.
- (2) 2025.02.05.(2025.02.10)기준 공매목적 부동산 전입세대열람(상가등록사항열람) 결과, 아래와 같이 우리자산 신탁(주)의 동의 없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며, 2025.02.05.(2025.02.10)이후로 우리자산신탁(주)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전입신고가 되어 있을 수 있음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본 내용은 참고사항일 뿐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으므로 입찰자(낙찰자,매수인)가 공매응찰(매매계약) 전에 직접 현장 방문하여 조사 및 확인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인도 및 명도) 및 비용은 입찰자(낙찰자,매수인) 부담으로 합니다.

호수	<u>미동의</u> 전입신고자	전입일자	비고
402ই	0]**	2023.12.26	신탁등기 이후 전입신고
502ই	김**	2024.09.04	신탁등기 이후 전입신고
702호	0]**	2024.12.16	신탁등기 이후 전입신고
801호	황*	2023.11.28	신탁등기 이후 전입신고
901호	안**	2023.08.11	신탁등기 이후 전입신고
1001호	0]**	2024.06.28	신탁등기 이후 전입신고
1101호	근**	2023.12.01	신탁등기 이후 전입신고
1201호	김**	2023.09.01	신탁등기 이후 전입신고
1202ই	황**	2024.01.30	신탁등기 이후 전입신고

- (3) <u>공매목적 부동산에 점유권, 임차권, 유치권, 영업권, 사용권 등 일체의 권리제한사항이 있더라도 권리제한사</u>항 해결 및 소멸에 필요한 일체의 책임 및 비용은 입찰자(낙찰자,매수인) 부담으로 합니다.
- (4) 위 (1)항 내지 (3)항의 권리제한사항을 입찰자(낙찰자,매수인)는 충분히 인지하고 응찰(매매계약)하여야 하며 해당 권리제한사항으로 인하여 입찰자(낙찰자,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입찰자(낙찰자,매수인)는 우리자산신 탁(주)에 공매부동산 매매계약 해지, 해제, 취소, 무효(이하 용어불문) 및 매매대금의 감액요구, 매매대금 납 부 기한의 연장 등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 및 민원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차. 기타 권리제한사항

(1) 공매목적 부동산에 아래 표와 같이 부동산압류가 결정된 바, 공매목적 부동산이 지방세징수법에 의거 공매처분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부동산압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일체는 입찰자(낙찰자,매수인)가 입찰자(낙찰자,매수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부담합니다.(단, 공매목적 부동산에 대한 당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인 경우에는 공매처분대금으로 해당압류사건을 정산합니다.).아울러 본 내용은참고사항일 뿐 실제상황과 다를 수 있으므로 입찰자(낙찰자,매수인)가 공매응찰 전에 직접 조사 및 확인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 및 비용은 입찰자(낙찰자,매수인)가 부담으로 합니다.

물건번호	호수	등기목적	접수일자	주요 등기사항
1	201호	압류	2024년07월01일	권리자 금정구(부산광역시)
2	401호	압류	2024년07월01일	권리자 금정구(부산광역시)
3	501호	압류	2024년07월01일	권리자 금정구(부산광역시)
4	601호	압류	2024년07월01일	권리자 금정구(부산광역시)
5	801호	압류	2024년07월01일	권리자 금정구(부산광역시)

- (2) 공매목적 부동산과 관련하여 '통지서(제목: 유치권 신고서. 발신자 : 강**)' 가 당사 측으로 접수된 바, 입찰자 (낙찰자,매수인)는 필히 현장 확인하여야 하며 유치권 해결에 필요한 책임 및 비용은 입찰자(낙찰자,매수인)가 전부부담하며 입찰자(낙찰자,매수인)는 이와 관련하여 우리자산신탁(주)에게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 (3) 위 (1)항 내지 (2)항의 권리제한사항을 입찰자(낙찰자,매수인)는 충분히 인지하고 응찰(매매계약)하여야 하며 해당 권리제한사항으로 인하여 입찰자(낙찰자,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입찰자(낙찰자,매수인)는 우리자산신탁(주)에 공매부동산 매매계약 해지, 해제, 취소, 무효(이하 용어불문) 및 매매대금의 감액요구, 매매대금 납부 기한의 연장 등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 및 민원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8. 유의사항

- 가. 공매목적물에 대한 인도 및 명도 책임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 나. 응찰자는 공매공고,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매매계약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이전에 완전 히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예정자는 필히 현장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매수자에 게 있습니다.
- 라. 낙찰자로 결정되더라도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공매요건이 해소되어 낙찰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마.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매수인으로서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수인으로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바. 당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이 공매공고 등의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낙찰이나 체결된 매매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 사. 매도자는 매각부동산에 관한 다음 각 항에서 열거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응찰자는 반드시 사전에 공부의 열람, 현지답사 등으로 물건을 확인하신 후 응찰하시고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 ① 매각부동산의 현황과 공부상 수량의 차이 및 물적하자(등기부등본과 현황의 차이 등)
 - ② 법률상 원인무효로 인한 권리상실 내지 권리제한
 - ③ 행정상(환지, 징발, 개발제한, 기타 모든 도시계획) 권리제한
 - ④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써 받는 권리의 제한
 - ⑤ 등기부상 목록과 현황과의 상이
 - ⑥ 천재 또는 비상사태로 인한 피해
 - ⑦ 민법 제569조 내지 581조에 정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 ⑧ 본 사업부지 내의 유치권 및 등기되지 않은 임대차
- 아. 본 공매공고는 신탁관계인의 사정 등에 의하여 별도 공고 없이 임의로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고, 공매물건의 원인채무 변제 등으로 인하여 취소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당사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공매 참가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 공매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라도 공매물건의 원인 무효의 사유가 있거나 제한물권의 실행, 매매계약에 민법상 무효나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소유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이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차. 유찰된 경우 다음 공매 개시 전까지 전 차수 공매조건이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 카. 매수인은 매매계약서 검인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계약체결일 이후 30일 이내)를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여야 하며, 위탁자의 체납조세로 인하여 매매계약서 검인이나 등기접수가 거부되는 경우 매수인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매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매수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 타. 공매 관련 내용은 당사 공매입찰 참가자 준수규칙에 의하며, 동 규칙 및 매매계약서 등은 당사에 비치되어 있으니 방문을 통해 사전에 열람하시기 바라며,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07월 21일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